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 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 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3조 및 제6조 개정 등)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안 20조 신설)

징수한 과징금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시점까지 시·도지사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안 제21조 신설)

과징금 납부통지와 처분대장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함

라. 과징금의 수납기관 (안 제22조 신설)

과징금 수납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7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호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성명 (대표자)	
납부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수납인
----------	-----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시·도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성명 (대표자)	
납부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귀하	수납인
----------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성명 (대표자)	
납부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직인	수납인
----------	-----

257mm×182mm [보존용지(2종) 70g/m²]

과징금 처분대장

과 징 금 처 분 대 장

① 발행 번호	② 납부고지 연월일	③ 성명 (대표자)	④ 주소 (회사명)	⑤ 위반내용		⑧ 과징금	⑨ 납부 기간	⑩ 납부일	⑪ 비고
				⑥ 날짜	⑦ 위반행위				

257mm×182mm[보존용지(1종) 7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 ----- ----- ----- ----- ----- ----- 제4조제6항-----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 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광역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면허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생략)

<신설>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

-----.

1.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

-----.

2.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

